

2021년 하반기부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2021년 하반기부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 Contents

01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2
02	심판-조정연계 제도 도입	3
03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4
04	심판집중심리 절차 도입	5
05	통일된 심리절차 기준 도입	6
06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7
07	기술그룹설명서 제출, 정정심판결과 통지 제도 개선	8
08	심판비용 부담 제도 개선	9
09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도입	10
10	면담&설명회를 통합한 '심판사건 설명회' 도입	11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특허심판원은 심리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민간의 기술 전문가를 특허심판에 참여시키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 정확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절차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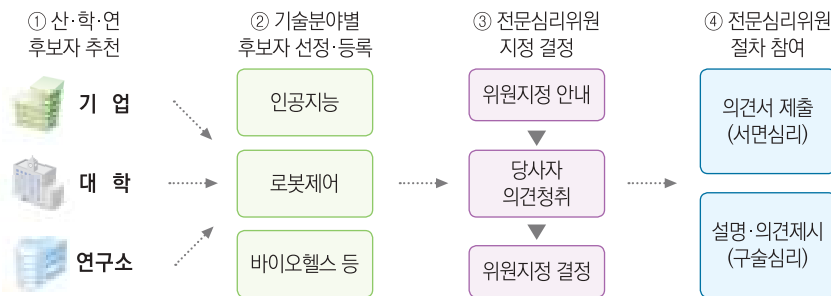
특허심판원은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특허심판에 참여시킵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전문심리위원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지정합니다.

심판장은 특정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 · 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할 필요

### 주요내용

- 심판장은 필요 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전문심리위원은 기술 내용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설명,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1년 10월



## 심판-조정연계 제도 도입



특허심판원은 심판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과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재산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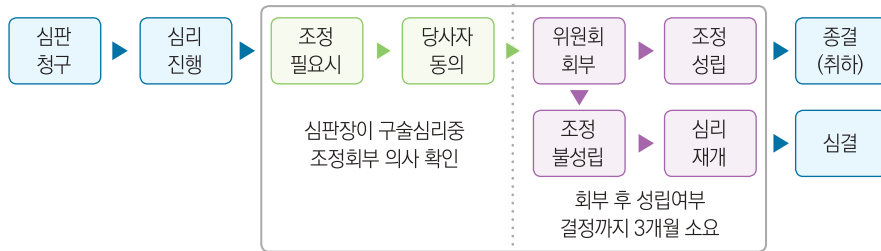
산업재산권 분쟁은 해결에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되므로, 심판 중에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따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심판과 조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조정제도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장이 심리 진행 중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취하간주되며, 조정이 결렬되어도 해당 사건은 신속심판으로 진행되어 조정기간(3~6개월 소요)으로 인한 심리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심판-조정 연계 흐름도



## 심판-조정 연계 제도

### 추진배경

-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불리하므로, 필요 시 심판과 조정을 연계하여 당사자가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 조정 필요시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사건을 종결

### 시행일

- 2021년 11월



##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특허심판원은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심판장이 제출시기를 미리 알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뒤늦게 제출한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심리지연 방지를 통한 신속성 제고

심판절차에서 일당사자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증거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중소기업 등에 불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청구 이후 당사자 간에 공방이 충분히 이뤄진 이후에는 심판장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하는 경우 심판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증거 등은 각하됩니다.

한편, 즉시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나, 증거 제출이 지연된 이유를 정당하게 소명하는 경우 해당 증거는 심리에 반영됩니다.



## 적시제출주의 제도

### 추진배경

- 심판절차의 주장·증거를 제출하는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분쟁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주요내용

- 심판장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제출시기를 미리 알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뒤늦게 제출한 증거는 각하

### 시행일

-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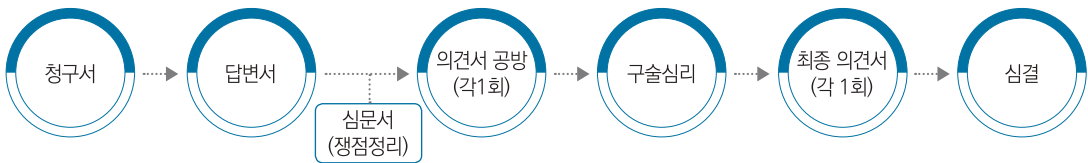


## 심판집중심리 절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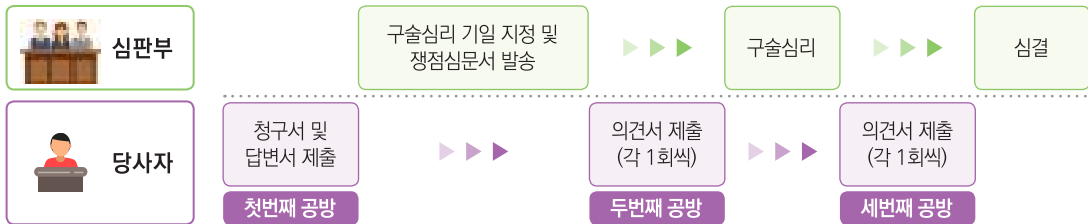
특허심판원은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소송과 연계된 신속·우선심판 등 신속한 심결을 요하는 심판사건을 대상으로 **심판집중심리 절차를 도입**합니다.

###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심판집중심리

특허심판원은 신속한 쟁점정리 및 구술심리 개최 등을 통해 신속히 심리를 종결하는 심판집중심리 절차를 도입합니다. 심판집중심리 절차는 신속한 심결을 요하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상 : 침해소송과 연계된 신속·우선심판, 대기업-중소기업 간 사건 등 신속한 결론을 요하는 사건
- 세부 절차 : 당사자 간 1회 공방(청구서·답변서 제출) 후 쟁점심문서 발송 및 구술심리 개최 등을 통해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여 심결 시까지 당사자 간 3회 공방(서면 횟수 6회)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심리를 종결



## 심판집중심리 절차 도입

### 추진배경

- 사건이 관리되지 않거나 사건 성숙을 이유로 서면에 의한 수차례 공방을 허용하여 심판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주요내용

- 당사자가 동일·유사 주장을 반복 하는 등의 심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결시까지 3회 공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

### 시행일

- 2021년 9월



## 통일된 심리절차 기준 도입



특허심판원은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중간서류 부분송달 시 제출기간 부여 및 구술심리 신청시 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정성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리절차 강화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심판관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온 심리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중간서류 부분송달 시, 새로운 주장·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주장·증거 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요약서를 참고\*하되, 심판부 재량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심판부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요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를 신청한 사건은 구술심리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심리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심판서류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서면심리통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된 중간서류의 부분송달 시 제출기간 부여를 금지\*\*하고, 신속히 심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미 확정된 심결과 주장·증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구술심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여 구술심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 심결의 결론을 달리할 정도의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현 행	개 선
중간서류 부분송달 제출기간	• 중간서류 부분송달 시 제출기간 부여기준 없음	• 중간서류 부분송달 시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한 경우만 1개월 내에서 제출기간을 부여하되, 양 당사자에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간 부여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처리	• 구술심리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서면심리 통지하는 경우 있음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구술심리 개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심리통지, 이후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제출기간 부여 금지 및 1개월 내 심결



## 통일된 심리절차 기준 도입

### 추진배경

- 심리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리절차의 통일성·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 (중간서류 부분 송달) 새로운 주장 증거 제출 시에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 제출기간 부여
- (구술심리 신청 조치) 당사자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서면심리 통지 이후 추가 서류에 대한 제출기간 부여 금지

### 시행일

- 2021년 9월





##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그 신청 절차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의성 증대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부분 송달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심리종결 전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대상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과 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 행	개 선
신청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사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li> <li>• 심판사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li> </ul>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급여</b> 수급자</li> <li>∴</li> <li>〈생략〉</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기초생활</b> 수급자</li> <li>∴</li> <li>〈생략〉</li> <li>∴</li> </ul>
신청서류 제출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증명 서류 직접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공무원이 전산을 통해 직접 확인</li> </ul>



##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필요

###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민원인이 제출 할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

### 시행일

- 2021년 11월



## 기술그룹설명서 제출, 정정심판결과 통지 제도 개선



특허심판원은 청구인만 제출할 수 있는 **기술그룹설명서**를 **피청구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정심판의 결과**를 동일권리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다투는 중인 **당사자에게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경제적인 심판 수행

심판 청구인은 기술분야에 맞는 심판부가 지정되도록 심판청구 시에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에게는 기술분야에 맞는 심판부 지정을 요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정심판의 결과는 법원에만 통지될 뿐 동일권리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다투는 당사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 정정으로 청구범위가 바뀌었음에도 바뀌기 전 권리범위로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피청구인도 필요한 경우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다만, 전문기술분야에 맞는 심판부가 심판의 초기에 지정되도록 설명서 제출은 심판 초기에 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정심판의 결과를 심판원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당사자에게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술그룹설명서 제출, 정정심판결과 통지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심판청구시에만 심판부 지정을 위한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또한, 정정심판 결과를 관련심판 소송의 당사자에게도 안내하여 관련 다른 심판이나 소송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 피청구인에게도 기술그룹 설명서 신청기회를 부여
- 정정심판 결과를 동일권리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

### 시행일

- 2021년 10월



## 심판비용 부담 제도 개선



특허심판원은 당사자의 성실한 심판수행을 유도하고자 고의·중과실 등 심리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앞으로 **심판비용 전액을 실비 부담**하게 합니다.

### 심판비용의 공평한 부담

당사자에게 사건의 심판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나, 일측 당사자가 심판 중에 거짓행위를 하거나,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타측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승소하여 피해 입은 당사자가 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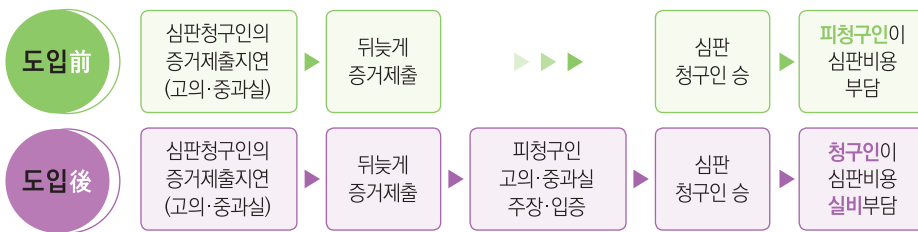
한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측에 심판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 수임료가 실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아(수십만 원)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에서 행했던 거짓행위나 심리지연 행위가 적발되면, 심판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심판비용 일체를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심판비용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 수임료를 특허소송의 소가(1억원)에 따라 결정되는 대리인 수임료(740만원) 내에서 실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행위나 심리지연 행위는 구체적으로 ① 일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제도 개선 전·후 심판비용 부담 사례 비교



### 심판비용 부담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심판과정에서 허위조작자료 등 거짓증거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 적발 시 심판 승패와 관계없이 심판비용 일체를 거짓행위나 심리를 지연시킨 자가 실비로 부담

#### 시행일

- 2021년 10월



##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도입



특허심판원은 심판당사자가 대전 또는 서울의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집(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심판정에 접속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구술심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용자 편의성 증대

특허심판원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 개최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쉽고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대전, 서울의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인터넷 상의 영상심판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구술심리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누리집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심판사건 당사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나 노트북, 웹카메라, 헤드셋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영상심판정으로 출석하여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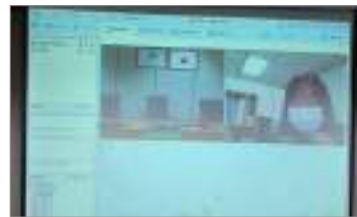
#### 인터넷 구술심리 안내

- **개최대상** : 양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에 동의한 공개 사건  
\* 특허법 154조3항/상표법 141조2항 :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구술심리신청서의 신청 이유란에 개최방법을 기재하여 제출
  - 이미 다른방법으로 구술심리 개최가 결정된 경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 \* 구술심리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기일변경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제25호 서식)
- **시스템 준비 사항**
  - 인터넷이 연결된 PC/노트북에 웹카메라와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보안성이 확보되어있어야 함(한글 윈도우10, 최신백신점검 등)
- **회의실 접속 방법**
  - <http://vc.on-nara.go.kr> 접속 →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바로가기 클릭 → 본인 이름/ 휴대폰으로 받은 코드번호(영문, 숫자 혼합 8자리) 입력 후, 입장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심판정 입장

####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vc.on-nara.go.kr)



####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화면



##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도입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대면 심리가 제한되고 영상시스템을 통한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구술심리를 확대할 필요

### 주요내용

- 당사자가 집(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심판정에 출석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구술심리' 제도를 도입

### 시행일

- 2021년 8월



## 면담&설명회를 통합한 ‘심판사건 설명회’ 도입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면담 및 설명회를 **심판사건 설명회**로 통합하고, 내용을 녹취합니다.

###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절차 강화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시행에 오던 면담 및 특허·상표·디자인 설명회를 ‘심판사건 설명회’로 통합합니다.

심판사건 설명회 내용은 속기사가 참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하여, 당사자 등이 녹취록 복사 신청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시 양 당사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부에서는 주심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부 모두가 참석합니다.

설명회 장소도 심판사건 설명회장으로 일원화하고,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또는 인터넷 전화기를 통한 그룹콜 방식의 심판사건 설명회의 경우 당사자는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사건 설명회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의사소통 절차	면담, 특·상·디 기술설명회 ▶	심판사건 설명회
기록 작성	면담기록서, 결과보고서 등 ▶	녹취록 작성(속기사 참여)
참석 범위	주심 ▶	(원칙)주심, (필요시)심판부
개최 장소	면담실, 심판장실 등 ▶	심판사건 설명회장
의사소통 형식	대면, 영상, 전화 ▶	좌동



### ‘심판사건 설명회’ 도입

#### 추진배경

-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담 및 특허·상표·디자인 설명회를 ‘심판사건 설명회’로 통합하고 내용을 녹취할 필요

#### 주요내용

- 면담 및 각 분야별 설명회를 ‘심판사건 설명회’로 통합
- 속기사가 참여하여 녹취록 작성
- 주심 참석 원칙, 심판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심판부 모두 참석

#### 시행일

- 2021년 11월



## 2021년 하반기부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허심판에 대한 문의 및 서류제출 처



#### • 특허심판 안내

특허심판원 누리집 : <http://www.kipo.go.kr/ipt/>

특허고객상담센터 : ☎ 1544-8080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 02-6006-4300

누리집 : <http://www.pcc.or.kr>

특허청 누리집 : <http://www.kipo.go.kr>

특허로(전자출원 및 온라인 심판청구) 누리집 : <http://www.patent.go.kr/>

대한변리사회 누리집 : <http://www.kpa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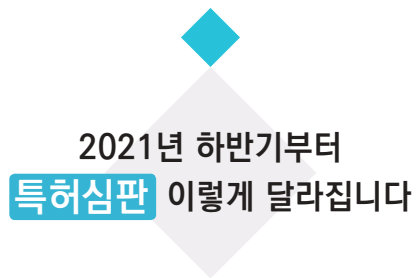
#### • 심판서류 제출처

##### ① 특허심판원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 특허청 고객지원실

##### ② 특허청 서울사무소

우)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5층



2021년 하반기부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kipo.go.kr/ipat/](http://www.kipo.go.kr/ipat/)  
1544-8080